

# 정 관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제정: 2016. 5. 3.  
1차 개정: 2017. 3. 24.  
2차 개정: 2017. 6. 1.  
3차 개정: 2019. 3. 29.  
4차 개정 2020. 9. 18.  
5차 개정: 2022. 3. 29.  
6차 개정: 2023. 3. 28.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tudio Dragon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2. 국내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교류사업
3.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
4.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및 판매업
5. 이벤트, 문화행사의 주최, 주관, 후원 및 연예인 대리업
6. 무대, 세트 시스템 공사업
7.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8.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9.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연예보조업
10. 투자업, 투자자문업
11. 회사 목적과 관련된 인터넷신문사업
12. 안경 및 선글라스의 기획, 제조, 국내외 판매업
13. 방송기계, 장비, 시설 임대업
14.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 포함) 관련 매매 및 중개업
15.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 포함)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중개, 마케팅업, 광고대행업
16.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중개, 마케팅업, 광고대행업

17.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영관리업무

- (1)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 (1)~(4)에 부수하는 업무

나.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 (1)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제공을 위한 자금조달
- (2)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18.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tudiodragon.net](http://www.studiodragon.net))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단,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

## 제8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외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률에 따라 우선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3% 이내에서 행사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에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배당을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 ⑤ 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 우선주식 일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우선주식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당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주식과 혼합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제8조의3(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 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간(이하 "전환기간 만료일")으로 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⑤ <삭제>
- ⑥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8조의4(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다.
  -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상환주식을 본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다만,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 대상주식을 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본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⑦ 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외국인이 국내 지점 등을 통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

을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5.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이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삭제>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에 의한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의3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 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삭제>
-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의 합이 이천오백억(2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삭제>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액면총액의 합이 이천오백억(2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17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

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을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본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하여는 법률 및 제8조의2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이사회**

#### **제29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를 기준으로 그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률과 본 정관에서 정한 최소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고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의2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제36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 ⑥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 **제41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1조의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41조의4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의5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 소집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41조의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1조의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계 산**

#### **제42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

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 **제46조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47조 (주식의 소각)**

-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및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등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정관은 본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본 회사는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6년 3월 18일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제3조(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정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6조, 제7조는 액면분할효력발생일(2017년 4월 28일 예정)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의 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위는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의 정관 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김영규 (법인)

공동 대표이사 김제현 (법인)